

第258回國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2月14日(火)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3.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7. 2005년도 행정입법 검토의 건
8.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審査된案件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창일·강혜숙·구논희·김재경·김태홍·김효석·노현송·문학진·민병두·백원우·서해석·신계륜·심재덕·안상수·유선호·이목희·조배숙·정봉주·정성호·지병문·최재성·한명숙·홍미영 의원 발의) 2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고홍길·김기현·김무성·김재경·김희정·박찬숙·신상진·이재오·이해봉·진수희 의원 발의) 2
3.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고홍길·권영세·김기현·김무성·김재경·박찬숙·신상진·윤두환·이인기·이재오·이해봉 의원 발의) 2
4.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안상수·이인기·이군현·나경원·권영세·임태희·이재웅·최순영·김영숙·김희정·안명옥·이진구·이성권·정병국·유정복·박승환·박형준·최구식·박찬숙·김석준·임해규·고홍길·한선교·김충환·서상기·김기현·심재엽·이혜훈·권철현·주호영·박세환·유승민 의원 발의) 2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인영·조배숙·지병문·최재성·백원우·구논희·정봉주·강혜숙·이경숙·유시민·이광철·강기정·김형주·김태년·김재윤·이주호·이원영·임해규·노현송·강창일·최규성·김태홍 의원 발의) 2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7. 2005년도 행정입법 검토의 건 2
8.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2

(10시18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현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황우여 입법조사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해찬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백원우 위원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백원우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인사 한마디 하시지요. 잠시라도 우리 교육위원회를……
백 위원님,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 없으시면……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재경·김태홍·김효석·노현송·문학진·민병두·백원우·서해석·신계륜·심재덕·안상수·유선호·이목희·조배숙·정봉주·정성호·지병문·최재성·한명숙·홍미영 의원 발의)
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고홍길·김기현·김무성·김재경·김희정·박찬숙·신상진·이재오·이해봉·진수희 의원 발의)
3.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고홍길·권영세·김기현·김무성·김재경·박찬숙·신상진·윤두환·이인기·이재오·이해봉 의원 발의)
4.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안상수·이인기·이군현·나경원·권영세·임태희·이재웅·최순영·김영숙·김희정·안명옥·이진구·이성권·정병국·유정복·박승환·박형준·최구식·박찬숙·김석준·임해규·고홍길·한선교·김충환·서상기·김기현·심재엽·이혜훈·권철현·주호영·박세환·유승민 의원 발의)
5.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유기홍·이인영·조배숙·지병문·최재성·백원우·구논회·정봉주·강혜숙·이경숙·유시민·이광철·강기정·김형주·김태년·김재윤·이주호·이원영·임해규·노현송·강창일·최규성·김태홍 의원 발의)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7. **2005년도 행정입법 검토의 건**
8.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

(10시20분)

○위원장 황우여 의사일정 제1항 이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입법 검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이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산고 끝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아교육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유아기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활용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포함하는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는 전체적인 인적자원 개발방향에 맞는 유아교육의 발전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시·도에서는 그 방향에 맞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인 유아교육 발전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수단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 개발에 부응하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 부장관은 유아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아교육법의 실질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 일정 제2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 일정 제3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한나라당의 김영숙 의원입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유아교육기관임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 미비로 기관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의 교원과 학부모는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에서 제외되고 유치원 교육과정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도 체계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에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기관인 유치원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됨은 유치원을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 유아교육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단위 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 보장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원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현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일

부개정법률안 개정의 선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유아교육기관도 우리나라 교육체계상의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정규 교육기관이고 유아교육 당사자들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수임하고 있음에도 시·도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에 의사 표출을 못하고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유아교육법상에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들도 초·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동등하게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수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 일정 제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0분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악화에 따른 교육세 결손뿐만 아니라 열악한 재정 문제로 인한 지자체 전입금 부족 등 건설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 구조로 인하여 2005년 12월 기준 시·도교육청의 부채액이 무려 2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점점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의 부담비율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000분의 194에서 1000분의 200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유아교육·특수교육·평생교육 등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문제로 인해 더욱 소외되고 있는 특정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도움을 줌으로써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판단하시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의원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와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인 대응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체계적·전략적 정책 개발 및 유관 시민·사회 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종합적·체계적 조사·연구와 정책 대안의 개발을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고,

둘째, 재단은 동북아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분석, 독도 관련 사안 연구, 전략·정책 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 건의, 역사·독도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셋째, 정부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교육인적자원부를 재단의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재단을 지도·감독하게 하고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안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 대체로 감정가격보다 약 20% 정도 저렴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개발지역안에 필요한 학교를 적기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여 이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이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에서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신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4조에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위원회가 총리 소속하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3조의2의 경우는 제4조의2로 법조문의 위치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제1항에서 정부는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 주체보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바꾸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기본’을 빼는 것으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제2호에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운영 및 교육과정의 연계대책 강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행 제4 조제1항제2호와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제7항의 경우 유아교육 관련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것으로 역시 제5항과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신설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 신설규정이 설치부분, 기능부분과 구성·운영부분을 같이 묶어서 1항부터 6항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이를 좀더 분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제8조의2의 1항, 2항, 3항의 경우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좀전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병행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가 타당한 입법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병설유치원이라든지 학급규모가 1~2학년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위원 정수를 5인 이상 9인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함께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항과 5항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제8조의3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항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인데 이는 제8조의4로 수정하고 1항, 2항으로 구분해서 1항에서는 국립유치원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2항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대통령령에서 구성관계를 정하고 운영관계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규칙이란 표현보다 유치원규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62조에서 선거인단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을 초·중등학교와 동등한 위상을 확보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유치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 좀전에 말씀드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병행해서 파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유치원당 5인 이상 9인으로 규정되고 있는바 초·중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비가 학생 100명당 1.4~1.5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5인 이상 9인으로 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비는 7.6~13.8인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수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중 내국세 부담비율을 1000분의 194에서 200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안이유에서 적시하고 있는 유아교육·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조(목적) 부분 본문 중에 ‘교육기관’이라고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더 첨삭해서 ‘평생교육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소비세의 경우는 2010년까지, 교통세의 경우는 2006년까지,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2010년까지 그 효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족재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내국세 부담비율을 1000분의 200으로 상향할 경우 2007년에는 7002억 원의 교부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부담비율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경제라든지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 관계부처와 충분한 의견수렴 후 적정성이 도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유기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을 밝히고 있고 제5조에 사업부분을 밝히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에 관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설립되어 있는 고구려연구재단과의 업무조정 부분이라든지 통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8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에도 규정이 있습니다만 연구·조사·기술·교육 등에 관해서는 외국인도 임용할 수 있는 조항이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9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규정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부처에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단체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제정법안에는 연차보고서 제출관계라든지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안 제20조의2에 연차보고서의 제출 규정이라든지 안 제21조의2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과 제6항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은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안 제4조제3항에 초·

중학교의 경우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의 경우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6년에는 850억이, 2007년도에는 7631억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를 100분의 50으로 한 이유로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무교육의 본질은 무상성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제2조제13호 부분이라든지 제65조의 규정과 같이 개정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부칙 제3항에 성남관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초·중학교의 경우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25로,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21개교가 신설될 예정인데 이와 같은 특례조항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올해 2006년 1월 1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의 내용 속에 시·도 부담경비의 재원에 제5호를 신설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기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제정 또는 개정된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행정입법은 대통령령 23건, 부령 21건, 훈령 16건, 예규 2건 그리고 고시 7건 등 총 69건이고 이 중 국회법 제98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검토가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은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먼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등 법적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나서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상임위 미제출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7월 28일 국회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의 경우 입법예고안 또는 법제처 심사를 위한 초안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법 개정 이후에 총 12건의 대통령령이 입법예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입법예고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입법예고안 등이 기간 내에 제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입법 정비의 적시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모법에서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모두 시행일에 맞추어 정비되어야만 당해 법률이 제대로 시행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대통령령 중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 시기보다 늦게 제·개정된 경우가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4건입니다.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하위 법령이 제·개정되는 것은 잘못된 사례로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입법 미제출 및 제출 지연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미제출된 행정입법 사례를 보면,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의 제출 대상 행정입법은 총 69건이나, 이 중 우리 교육위원회로 제출된 행정입법은 43건이고 26건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의 경우 제출률이 2004년도에 비하여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대통령령은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사항과 직접 관련되므로 미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법정 제출 기간을 경과한 행정입법 사례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 43건 중 법정 제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행정입법은 60%인

총 2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서는 이와 같이 행정입법의 법정 제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출기간 경과에 따른 지연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는 10건으로 제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년도에 비교해서 행정입법 제출이 감소하고 있고 행정입법 제출기간 초과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서 제출이 감소하는 등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입법 제출 현황은 2004년도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의 자의적 입법을 방지하고 법률의 올바른 집행을 담보하고자 하는 국회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 규정 제3조제1항에서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 등 청구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소청심사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전쟁·사변과 같이 그 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책임이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것은 소청인의 권리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그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그 밖에 불가항력 등”이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결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이 100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학교급식법시행령에는 1회 급식학생이 50인 이상인 학교급식시설에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상의 대상 학교가 아니어서 학교급식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기의 균형 잡힌 식사가 향후 아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총 40건의 관련위원회 법률안 및 결의안 가운데 의견제시 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사실상 의견제시가 곤란한 7건의 법률안과 5건의 결의안을 제외한 28건의 법안 및 결의안 등 우리 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해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이규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휴대전화 등의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대학수능능력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규정에 의하여 전파차단장치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으로써 수능시험 고사장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와 같이 전파를 차단하는 경우 기술적인 측면과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인물에서 지적인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검토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먼저 권오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학진흥

원 육성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의 육성과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이미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이 제정되어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 소장의 국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 및 이와 관련된 국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일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국학진흥원에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병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법안입니다.

동 법안은 문화재청 관할하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두려는 것이나, 현재 문화재 관련 전문인양성을 위한 학과 및 석·박사 과정은 기존의 대학에 다수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고등교육법상 대학과 동일한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은 광주광역시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법안과 같이 특정한 지역에 당해 지역의 특수한 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교부금의 일부를 특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 인력의 유치를 위한 재원으로 교부금을 특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보편적인 초·중등교육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부되는 교부금의 특성상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유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해양특별자치시 설치 및 발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 중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부산시의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에 대해 현행 교육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특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특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은 지방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의 교육위원회 설치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지방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심의·의결되는 것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문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문춘추관 법안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직속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를,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보존 및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예문춘추관을 신설하여 그 소속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국사편찬위원회는 각종 사료의 조사·수집·보존·편찬 및 발간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한국사 연구의 중추 기관이라 할 수 있어, 이러한 국사편찬위원회를 전체 사료 중 일부라 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예문춘추관 소속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업자원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먼저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급식시설의 확대 설치, 각종 교육용 전기기기 사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교육용 도시가스 및 전력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 사용 요금은 일반 요금과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어 비싼 공공요금 지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으로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은 앞서 검토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에서 발의

된 결의안으로서 역시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교원도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동법의 적용 대상에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수는 대표적인 지식 주도층으로서 집단의 내부 권익 옹호 단체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교수 집단에게 허용하는 문제는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교수노조 설립 시 설립 최소단위, 교섭 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현재 초·중등 교원들과의 차이점으로 인한 현행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먼저 박재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흡연세법안은 국세에 흡연세를 신설하여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흡수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를 국세인 흡연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전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 중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외국 학교법인이 교육 관련 특구에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 지역에 국제화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현재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입법례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을 비롯하여 향후 외국 학교법인의 외국 교육기관 국내 설립 허용 문제 등 교육 개방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각 개별 법률에 국한된 판단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국민들로부터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안택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의지

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 법률안은 지방대학이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으로 그 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해제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바, 학교 부지의 확보가 그 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은 구도시의 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로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제도 개선과 특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어, 다른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입니다.

유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있어 효에 관한 내용이 필수 또는 선택교과목화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교사 자격증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효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특정 과목으로 지정하여 가르치기보다는 범교과적으로 지도되어야 할 사항이며, 특히 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을 위하여 중학교에서는 도덕을, 고등학교에서는 윤리를 교과목으로 하고 있는바, 학생들의 학습 부담

을 경감하고 교과목의 수를 줄이려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에 맞게 도덕, 윤리 등의 과목에 효에 관한 내용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의 황우여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 실천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앞서 검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안은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추가하고 있는바, 이는 지난 2005년 11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화장장 외에 납골시설을 추가한 것과 취지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설·사설 묘지는 학교로부터 5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은 묘지를 학교보건법상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200m로 설정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묘지의 경우 동 개정안으로 인하여 학교로부터의 이격 거리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교육 책임자로 하여금 장애인을 취업 및 진로 교육, 정보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구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진로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은 동 개정안과 같이 소극적인 차별금지 규정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의무 규정을 통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법안은 장애인의 입학 시 장애인이 아닌 자와는 다른 추가 서류를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시험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의 내용은 이와 같은 별도의 서류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기성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입법 검토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행정입법 검토한 것을 보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좀 시정되어야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의 경우에 그냥 이대로 보낼 것인지 우리가 좀더 논의를 할 것인지, 법안이 많아 가지고 오늘 간단히 넘길 수 있느냐 하는……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이런 부분들은 주로 수능 관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것인데, 지금 교육부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전파 차단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수능의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서 전파 차단하는 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완벽하게 모든 전파를 차단하려면 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너무 큰 불편을 주게 되고, 그리고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 정책 원리로 보면 소통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전기전자파를 차단하는 지역을 자꾸 만들어 두는 것은 전기통신정책의 큰 방향에 비추어 맞지 않는 등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관련위원회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그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논의해도 별 의미가 없겠네요.

○**위원장 황우여** 관련위원회 의견을 꼭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낼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거나 또 별도로 의견이 있으실 때에는 저희가 추가해서 정식으로 검토보고 내용에 포함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전문위원 얘기한 내용 중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의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지방의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고 해서 정부 예산 지원을 못 한다거나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의견제시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구기성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 교부금을 특별교부금에서 하는 것은 모르되, 일반교부금에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구기성** 지금 두 가지 점에서 교부금의 일부를 특정 지역에 특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고요, 또 교부금의 목적은 보통 초·중등 교육에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부금의 특성상 검토할 요소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특별교부금이나 일반교부금이나 일괄해서 교육 교부금의 성질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지요?

○**전문위원 구기성** 예.

○**지병문 위원**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할 수 있도록 지금 법안에 되어 있는데,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검토한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전문위원의 의견을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필요한 사업에 제한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특별교부금 교부 사유를 이렇게 법률로 정해 놓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통상 특별교부금은 제한된 기간, 단년도 사업으로 한정되어서 지급해 왔던 특성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 문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의 의견을 하나 추가하고, 이 균특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갖고도 부족할 때 필요한 연도에 교육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 법률적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앞으로 다른 모든 사업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의 지원 근거를 자꾸 넣다 보면 이것이 전체로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지병문 위원** 지금 이 법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래 법안은……

지금 부총리 말씀도 계셨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은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수요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면 좋겠는데요, 전문위원?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지금 교육부의 답변이 법률의 일반적 성격에 따라서 특별 지역에, 특별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검토한 후에 다시 지병문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행정입법 관련 법률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련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듣자는 것인데 짧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거론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것에 대한 서면 의견이라든가 개개인 위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자위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존경하는 백원우 의원님께서 제출하셨는데요, 지방교육 의결 기관을 시·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안이거든요.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도 또 교육위원회에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교육의 특성을 살리고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서도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로 일원화해서 흡수시키는 것, 이것은 교육위원회 교육의 특수성

을 말할·훼손하는 그러한 성격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부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이것이 반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교육자치가 겨우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시 지방자치로…… 교육이라는 것이, 거기 가서 흡수시키고 일원화시킨다는 것, 이것은 교육의 수장께서 보전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직접 좀 듣고 싶어서요. 물론 경기도지사님, 지방자치의 수장이 되시려고 하는 입장에서 답변이 어떻게 되나 저는 공정하게 듣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으신 것은 아닌데 부총리께서……

○**김영숙 위원** 그것은 아닌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 지사로 출마하신다는 말씀도 계신데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지금은 교육부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황우여** 예, 말씀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교육자치가 아직 확실히 뿌리를 안 내렸으니 좀더 기다렸다가 지방자치와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뿌리를 안 내린 것이 아니고 지금 뿌리가 내려졌는데 이것을 뽑아 버리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물으셨으니까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 우리 교육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학부모나 또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문제들은 결국 교육에 좀더 많은 재원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측면, 그리고 그 재원이 아주 효율적으로 쓰여야 하고……

그런데 그런 모든 측면에서 지금처럼 세계의 유례가 없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저렇게 완전히 분리 독립시키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가 전국에 1만 1000개나 되는 학교를 하나하나 특별한 사정을 살펴서 모두 지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과거 수십년 해 봤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와……

○**김영숙 위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현장의 특성에, 마치 1만 1000개의 학교를 배급식으로 나누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것은 개선해야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현장의 수요에 맞게 현장의 수요를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잘 협력하고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교육 발전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백원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담아서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접 선거로 뽑고 가능하면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는 통합하면 좋겠는데 통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통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통합을 하되 통합된 지방의회 교육분과위원회에 교육전문가들을 적정 수 참여하게 해서 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살려 가는 그런 방안으로 사실은 백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위원회 소위에서 심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번 5월 31일 지방선거나 그전에 최소한의 합의된 내용이라도 입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역시 소문대로 지방의 수장으로 나가시려는 뜻이 깔린 답변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는 지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재정이 교육에서는 상당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서 재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쪽의 교육 분야가 통합되어도 좋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재원만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에서는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의 전문성·자주성 이것이 더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재정은 국가가 뒷받침해야지요, 보장해야지요.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서로 연계해서 교육을 도모해야 된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교육자치는 교육자치대로 아주 탄탄하게 서 있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튼튼하게 서 있어서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서로 자주성·전문성을 살려 준다는 얘가지요.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교육자치가 독자적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지금 교육자치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내렸으면 교육의 전문성·자주성…… 제가 낸 법안을 좀 잘 보십시오. 보시면 뜻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물론 부총리께서 경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교육재정 운운하시면서 거기다 붙이는데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자치가 왜 중요한지 이것을 당당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여쭙어 본 것입니다.

하여튼 뜻은 알았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질의하시는 중에,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회의니까, 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 지금 생각은 제가 20년 전부터 정부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김영숙 위원** 출마와 관련된 답변이라고 듣지 않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20년 전부터 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호응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고 저런 의견은 국민에 반하는 의견이다 이런 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황우여** 우리 김영숙 위원님 발언은 부총리를 좋아하시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더 잘 되시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잠시 보류하고 우선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 위원 유아교육에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아주 시의적절한 법안들이라고 생각되고요.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은, 기본계획은 지금 기존의 체제에서도 수립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기본을 잘 수립하는 것보다도 재정 지원을 내실 있게 하는 것, 그다음에 관련된 체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우여 위원장, 지병문 위원과 사회교대)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에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로 확대하는 것을 발의하시면서 유아·특수·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렇게 발의 내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로 한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이런 쪽으로 쓰인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재정을 확대해 나갈 때 이런 확대된 재정이 유아교육의 질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방식인데요. 임플로이먼트 섭시디(employment subsidy)라고 있습니다. 아마 부총리께서도 잘 아실 것인데요, 고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초·중등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라 하더라도 교사에 대한 봉급 지원을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 교원과 국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열악한 근무 여건이 아이들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유치원 교육의 재정 지원을 늘려가야 된다면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임플로이먼트 섭시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난해 정기국회 때 여러 교육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립유치원 담임수당의 형태로 전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 11만 원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원 사정, 또 아직까지 의회 재원 형편상 인건비 보조를 주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주장 이런 것들이 예결위에서 함께 거론되면서 인구 30만 이하의 농산어촌과 작은 소도시에만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원칙적인 측면에서도 이주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대체로, 수도권들의 경우에는 특히 월 11만 원 상당의 담임수당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서 재원 형편이 허용하는 한 빨리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답변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영유아 보육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지방교육자치와도 연계가 되는 것인데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이원화되어 있고, 또 유아교육하고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유치원의 경우 지자체는 역할을 못 하는 반면에 보육의 경우에는 일반 지자체가 활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효율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정비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유아교육이 좀 제대로 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앞에서 답변하는 것을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때도, 지금은 유아교육이나 특수교육 같은 경우 1 대 1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에서도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장애유아 무상교육 같은 경우에 1 대 1로 해놓으니까 지자체의 예산 여건이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장애유아 무상교육처럼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경우에도 1 대 1 매칭을 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총 8억 원의 예산이 제대로 다 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또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1 대 1 매칭이 아니라 중앙에서 좀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헤드 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중앙이 80%, 지방이 20%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이 좀더 역할을 해야 될 저소득층에 관련된 사항 같은 것들은 매칭 방식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기본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진수희 의원께서 재정을 늘리는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런 것과 병행해서 재정을 늘릴 때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아교육에 쓸 수 있도록 방안들을 미리미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유아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치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실 교육자치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유치원에도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에 이때까지 학운위가 설치 안되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2학년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이 지금 58%를 차지합니다. 2학년 이하라면 원아 수 60명 정도가 안 되는 유치원이 전체의 58%를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 상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발의하신 법안처럼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학운위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교원이나 학부모대표를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학부모의 경우에 유치원은 1년 기간에다, 또 선택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을 많이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영속적으로 계시는, 또 관심을 가지시는 학부모대표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모든 유치원에 강제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따를 수 있겠다 하는 걱정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우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직선제로 가 버리는 것이 더 좋은 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있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에 실제 운영되는 현장을 가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내에 유치원을 병설하고, 지금까지 그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학운위에 편입되는 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차라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를 구성해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전체 시설이나, 예산의 이용이나 활용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도움을 줄 것 같고요.

독립 유치원 중에서 규모가 작은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숫자를 좀 조정해서라도 운영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에서 좀 정치하게, 여론 수렴도 하시고 방안도 고민하셔서 가지고 저희들이 법안 심사할 때 좋은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내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안인데요. 지금 보면 학교용지 부담을, 개발업자에 대한 부담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으로 차별화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점을 고려해서, 다른 공공시설의 용지에 조성한 것까지 교육용지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더 줄어든 것이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다른 공공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하되 교육용이니까 좀 낮은

다는 측면에서 70%가 된 것입니다.

○**이주호 위원** 사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까마는 학교용 지부담금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현행법처럼 개발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아파트 값의 상승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초·중등학교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해서 이렇게 차별한다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확대 적용하면 개발업자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 문제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를 일원화해서 결국은 일반 자치에서 적극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잘 협력하고 가능하면 잘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지 부분에 관해서, 지금 학교용지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법이 정기국회 때 건교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용지가 도시기반 공공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꼭 필요한 필수공익시설인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고 도시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나 공원을 짓는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시설업자가 학교용지를 선확보하고 그 비용을 당연히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공익시설과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릴 것이냐, 그런 점 때문에 교육용 시설을 최우선에 두고 가격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법조문에 보면 자세히 있습니다마는, 규모에 따라서 주로 공기업이 운영하는 것들은 지금 말

하는 것들이 100% 적용되고 민간기업이 작은 규모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해서, 그것은 그냥 감정가격으로 사는 것으로 조문에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이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원우 위원** 상임위에서 소문 가지고 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소문 갖고 얘기 하셨다가 소문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될 경우 그 발언들을 하셨던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책임을 지실 것인지,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들은 이제는 상임위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처럼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질러 놓고서는 나중에 가 가지고서는 없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마 안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와 관련해서 여쭙았는데, 의견을 좀 내었는데, 지금 이주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야당에서는 작은 정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작은 정부를 얘기하자고 했을 때는 아마도 중앙정부의 축소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일을 좀 줄이고 중앙정부의 규모를 줄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자치법과 관련해서도 야당 내에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작년에 발의되고도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에서도 이견들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된 측면들이 있지만 한나라당의 이견들이 좀 빨리 정리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 간단하게,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으신 것인데요.

만약 유치원에 학운위를 설치해서 선거인단을 만들게 되면 초·중등학교의 운영위원들과 유치원의 선거인단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김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이 법안에서, 이런 맹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을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도 김영숙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방법대로 선거인단

구성하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아주 세부적인 대안을 준비해 봤습니다마는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그 비례를 맞추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아까 이주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소규모의, 한두 학급의 유치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선거인단으로 가기 때문에 비례 문제가 생기니까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는 차제에 아예 직선제로 감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불필요하고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 상임위에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이 계신데요. 차제에 심사소위에서 교육자치법 문제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기를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각 당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위원장님에게 적극적으로 촉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지병문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백원우 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은 더 이상 논란 전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다가오게 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자치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더불어서 야당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정리를 빨리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놓으신 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쭙 보겠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는 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2000세대의 기준을 굳이 설정해 놓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것이지요?

200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냥 조성원가로 하게 되어 있는데 꼭 2000세대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 그다음 수도권 지역을 보면 이제 대단위 규모의 택지개발사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택공사라 하더라도 도심 소규모의 재개발들, 특히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많은 부지들에 대한 소규모 개발들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그냥 조성원가로 내게 된다면 예전과 거의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감정가에서

조성원가로 하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한 20% 정도는 인하가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도 모든 공영개발에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도심지 재개발사업, 뉴타운 건설사업, 이런 것들이 2000세대 미만들인데, 숫자는 그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은 민간건설회사와 주택공사 같은 공영개발사업자가 같이 경쟁을 해서 수주하고 추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민간건설사업자도 똑같이 그런 의무를 부담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현재의 위헌 판결 문제 외에 그것으로 또 연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주로 공기업이 다 맡아서 하게 되는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에 우선 인하 적용토록 해도 저희가 조사해 보면 2009년까지 계획된 대규모 단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체 예산의, 토지 구입비의 약 50%가 전체적으로 절감됩니다.

○백원우 위원 전체적으로 절감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예 정부 구상으로 해 주시거나 하면 더 좋고요.

○백원우 위원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을 2000세대로 규정해 놓으면, 민간업자들이나 주공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항상 이런 것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950세대, 1990세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택지개발사업들을 하면서 법망의 어떤 규정들을 피해 가기 위해서 2000세대가 충분히 넘어가야 되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줄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시행자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편법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 때문에 도리어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부분부분적으로 난개발이 되어 버리는 현상들도 예상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 하나만으로 이 문제가 정리된다고 봐 주지는 마시고요.

부총리님도 특히 경기도 지역은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의 미비한 점들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점들을 차단할 수 있는 후속 보완대책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법안 심사 때 지적하신 문제들에 관해서 좀더 검토해서 심의 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다음에 진수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이 늘어난다라면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7000억에 가까운 돈들이 증가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결위나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속에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현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 시·도 교육청들의 부족한 재원들을 어떻게 채워 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세계 전문가이기도 하시니까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에서 교부율을 정한 조항의 효력이 금년 말로 만료됩니다.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19.4%를 배정하는 속에는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특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중에서 유아교육, 특수교육만이라도 아예 특례해서 0.6%가 늘어나는 부분은 최소한도 각 교육청이 그 몫으로 쓰도록 아주 특정을 지어 버려서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문제는 확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 전체 교육재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면 전체 28조의 교육재정 중에 2005년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4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고 나머지 4조를 가지고 유아교육, 평생교육, 특수교육, 또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모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아교육과 평생교육 부분을 확실히 몫을 지어서 지방교육재정으로 늘려 주면 이것은 희망 한국21사업과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금년에 이 부분은 추진하면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질의하신 게……

○백원우 위원 과연 1000분의 20까지 올리시는 게 가능할 것인지?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부처 간에…… 저희가 설득을 하고 예결위도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해서 정부가 다른 분야의 재원들을 줄여서라도 이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방법을 함에 있어서……

○백원우 위원 특수교육, 유아교육을 특정해 놓으면……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특정해서 최소한도 0.6%는 교육감들이 배정하도록 하면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이나 백원우 위원님이나…… 이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서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들도 모두 투표하게 되면 교육감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를 그 0.6% 이외에도 더 추가해서 할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원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부총리님이 답변하실 만한 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시중에 입학철을 앞두고 최근에 교복값 문제가 대단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 있으면서 좀 돌아다녀 봤더니 보통 20만 원을 호가하고 2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개의 대기업들이 시장을 거의 독과점식으로 장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학부모님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 3년을 입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 요즘 아이들이 패션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급품들을 대단히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브랜드가 있는 것을 입지 못하면 학급에서 왕따는 아니지만 거의 처지는 아이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들을 아이들이 저한테 하소연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았는데 공동구매나 이런 문제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하지만 원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소 제조업체하고 가격 차이가 대단히 크더라고요. 심지어 큰 것은 한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한 5만 원 정도 선인데 대메이커 같은 경우는 한 25만 원……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교육부총리까지 이 문제에 나서서 왈가왈부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좀 들지만 어쨌든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총리님께서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놓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여쭙 보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교복 문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청이든 교육부든 관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사정에 맞추어야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게 오르게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장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업계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저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 보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전에 추진되던 교복 물려입기 같은 것들이…… 말씀대로 1년이면 중학교 학생들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때문에 교복 물려입기 같은 운동들도 한번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우 위원** 교복 제도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교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도 각 학교에서 교복을 안 입혀도 되고 입혀도 되고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백원우 위원**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교복을 입고 있고, 물려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정서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교육부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통제한다라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논의는 한번쯤은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백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희 위원** 임태희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존경하는 백원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질의인데 자꾸 야당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촉구를 하시는 말을 듣고…… 우리 교육위에서는 여당,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육자치법을 논의하는데?

사실 이것이 논의가 안 되는 게 ‘야당의’ 또 ‘여당의’ 이런 입장에서라기보다도 아마 위원님들의 이것에 대한 고민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피차 금도로 생각하고 발언하기를 제의합니다.

○**백원우 위원** 그쪽에서 먼저 했어요.

○**임태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유아교육법과 관련해서 저는 한번 여쭙 보고 싶습니다.

정부 내에서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지금 유아교육에 대한 많은 지원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적 차원에서 유아교육, 의무교육, 그다음에 고등학교·대학교 교육—의무교육이 아닌 비의무교육이지요—이렇게 네 구분 혹은 세 구분을 해서 본다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뒤야 되겠다 하는 정부 내의 컨센서스가 있습니까? 재원 지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뒤야 되겠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교육이 각 분야별로 다 중요성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초·중학교는 무상 의무교육을 이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관해서는 만 5세아에 대한 무상 의무교육을 빠르게 확충시켜서 2009년까지는 전체 유아의 90%, 저희 생각으로는 2010년까지 전 만 5세아를 무상교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 3세아에 대해서는 최저소득 계층과 차상위 계층까지는 적어도 소득금액별로 차등화되는 지원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을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빠르게 확대하는 것이 저출산 정책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으로 가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준비, 또 정부 내에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들은 이미 되고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우리 유아교육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 하는 철학이 먼저 정립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준비하다가 많은 교육 관련 학자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도 실질적으로 취학 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찌 보면 유아 시절의 교육이 사실상 그 이후 교육의 대부분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유아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무교육은 지금 누구나 다 똑같이 학교에 보내서 다니니까 괜찮은데, 그 이전에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양극화나 갈등 요소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진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영원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그 이후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지지, 계속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가적으로 교육부가 정말 유아교육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주도권을 쥐고 정책도 개발하고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유아교육 문제가 만 5세 이상은 잘 됐습니다마는, 지금 부처 간에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부총리님께서 정부 내에서 함께 토론해서 교통정리를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총리님이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내용들이 되고 나서 가령 정부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것은 이런 목표를 정해서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서면…… 위원들이 내시는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라 정부 내에서 전체적인 기조 속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단연코…… 의무교육이 어차피 지금 역사성으로 들어가 있으니깐 그런데, 향후에 교육재정의 증가되는 부분은 유아교육에 최우선

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유아교육이나 의무교육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나 대학교는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집중해라, 돈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는 지금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대학교는 자율적으로 하고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물론 지금 공교육의 여러 가지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조건 경쟁만 도입한다고 뭐가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두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방향에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대학교육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학문 활동에 대해서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집중해서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학교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국회에서 제기됐던, 공청회까지 했던 학교용지에 대해 잘못 부과한 것, 헌소해서 소위 법이 위헌 판결이 났던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국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치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불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따라서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헌정 사상 현재의 판결이 있는 이후로 소급하여 환급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이라든지 또 다른 세법의 경우에 위헌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소급하여 다 돌려줄 것이냐?

앞으로도 특히 세법의 경우에는 위헌 판결의 가능성이 많은데,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어 왔던 세법을 어느 선까지 해서 돌려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문의한 바로는 현재의 판결도 소급하여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지는 않고 그 판결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민원을 해결하려는 점에서 보면 재원을

어떻게 하든지 마련해서 돌려주고 다 끝내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이 남겨지는 우리 헌정사의 선례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만일 국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시려면 저는 우리 현재 제도에 대한 안전판을 만들고, 현재 제도가 외국처럼 그런 절차를 상세하게 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일적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 운영에 커다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태희 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원칙적인 문제가 희생당하는 사례가 특히 행정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자면 보통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요. 그 처지를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것은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 물론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에 대한 토의가 조금 더 있을 테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정부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문제의 경우에도 학교용지에 대한 기존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실적인 규정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위 고등학교 이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인가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는가, 꼭 운동장하고 교실을 몇 평씩 확보해서 해야 되는가, 또 학교는 한 군데에 전부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학교용지 제도에 대해 지금 도시화 추세에 맞는 현실적인 학교용지법이 어떤 것인지를 교육부도 한번 보시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서 잠시 한두 말씀 쓴소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부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교육법에 관한 한 여야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통적인 목표를 두고…… 교육에 관한 한 궁극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저는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인 목표를 두고 그것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예를 들면 수단에서의 차이 혹은 속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터질 때 교육부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려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교육부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수능 같은 경우, 급하다고 해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엄벌하자는 취지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규정을 해 놓고 그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국회에서 법을 잘못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고친다, 이것은 잘못된 태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인데,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바꿔 달라는 얘기입니까, 뭘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그런 발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사학법의 경우에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교육부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만약에 사학법이 통과되고 나서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면서도 교육부가 그냥 추진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이고, 무책임한 것이고, 만약에 모르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부가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개방형 이사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많은 문제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운동을 법에서 하게 했다가, 아니면……

지금 사립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비리로 생각하는 것이 뭐니까? 교직원 채용 때 돈 받는 것하고 학교 돈을 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임시이사는 학교 돈을 빼 쓰는 것을 허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형적인 재단의 비리라고 하는 것을 양성화시키는 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지병문** 임태희 위원님, 시간을 좀 맞춰 주십시오.

○**임태희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재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좀……

국회의 여야 의원들, 교육위원님들이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한번 정확하게 그 내용을 얘기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자율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왔다갔다하는 입장이 되니까……

자율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존경하는 임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능에 관해서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지난해에 개정된 법으로 그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반 언론에서 요구했던 너무 가혹하니까 부분적으로 해 달라는 이런 것들을 현행 시행령 규정 또는 시행규칙 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그런 설명을 언론에 했던 것이고요.

○**임태희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답변을 먼저 하고 질의하십시오.

○**임태희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사학법에 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각 교섭단체마다 법안을 내서 그 부분에 관해 1년 여를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입안 과정을 거쳐 가신 것이기 때문에, 또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교육부가 상당히 깊이 있게 오랫동안 참여해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 중에 노조 활동을 허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미 1999년에 교원노조에 관한 법이 통과되어서 중앙회 단위로 노조 활동을 하는 것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에서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징계 사유가 되도록 되어 있으니 그것을 조문 정리 차원에서 단순히 법체계 자구 정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립형 사립학교는 6개 학교를 운영해 봤는데 그중에 3개 학교는 대기업이 자기 종업원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의 학교였고 나머지 3개만 진정한 사립학교인데, 이 학교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기간을 좀 연장해서 더 운영해 보고 판단해야 되겠다는 전문가들의 건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2100개의 고등학교 중에 현재 실질적으로 3개, 유사한 것까지 다 합쳐도 6개밖에 없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식의 방법으로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일반 공립 또는 사립고등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가 해서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예, 알겠습니다.

○**임태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지병문**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5분도 지나 버렸으니까.

○**임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정월 대보름이 그저께였는데 올 해 나쁜 기운들 다 물리치고 좋은 일들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지에 공감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8명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셨는데 그것이 아직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아까 임

태희 위원님께서도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유아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 교육감 선거인단에 유아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인단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현행 선거인단에 유치원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여당도 당정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김영숙 의원님 안의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데, 문제는 유치원도 규모가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학급이나 두 학급 정도의 영세한 규모의 사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들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위를 설치하고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좀더 세분화해서 규모별로 선거인단에 집어넣을 대표자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보완은 좀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는 직선제로 가는 것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운영위원회는 필요하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병설유치원은 일반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이 더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을 것 같고 기타 유치원은 작더라도 다 운영위원회를 독립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 개발 지역 땅값들이 점점 높아지고 또 교육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합니다만 몇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판교 지역 초·중학교 학교용지를 조성원가의 25%로 조성하는 특혜가 타당한가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교 지역은 땅값이 많이 높아졌지요?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해서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25%로 정했다고 하는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

는가 하는 것하고요.

또 판교보다 땅값이 더 높은 지역이 나오면 앞으로 25%보다 더 아래로 되는 전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판교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한 것은, 수도권에서 개발하는 어떤 지역보다도 판교 지역의 가격이 높게 산정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보통은 한 50억 내외인데 학교당 무려 354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동탄신도시로부터 양재에 이르기까지의 도로 건설 비용이 판교 부지 조성원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제대로 하려면 대체로 25%로 하는 것이 맞다는 실무협의 결과 이렇게 한 것이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수도권의 송파지구라든가 다른 지역들은 대체로 그린벨트이고 특별히 이것을 위하여 장거리의 국도나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연결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009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학교용지, 특히 의무교육 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게 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되면 공기업들이 경영상 감당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계산한 것이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 다만 지난번 현재 판교와의 연결 때문에 민간기업까지는 함께 못 갑니다마는 최소한으로 조정해 볼 때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기흥 위원 어쨌든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강력하게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대표발의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본 의원이 발의한 고구려연구재단지원법안도 지금 법안심사소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기관의 법률안을 제가 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동북아에 있어서 역사 전쟁이라고 할 만한 급변하는 사태, 그리고 특히 고구려연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 작년의 일본 교과서 문제라든지……

아마 조만간 시마네현 조례 제정 1주년을 기해서 일본에서 대대적인 독도 관련 망언들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고구려연구재단만으로는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확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을 만들어서 고구려연구재단을 그 속에 포함해서 흡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본교과서 왜곡 문제에 교육부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성과 있게 대응해 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최근에 중국에서의 발해 역사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실험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고구려연구재단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한 상황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고구려연구재단이 발족 이래 고구려사, 상고사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 와서 우리 동북아시아 역사 연구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동북아 3국에서 일어나는 역사 문제는, 중국의 경우에 동북공정의 형태로 중국 정부가 직접 설립하여 4200명의 연구원이 있는 사회과학원에서 변강사지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직접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하고 있고 또 이미 실험용 교과서를 빠른 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도 작년에 독도라든가 일본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일본 문부성이나 외무성이 아주 조직적으로 주도해 가려고 하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학술연구단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운영해 보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특히 각국의 시민단체들과 양심 세력들과 진보적인 단체들과 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각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전략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포괄적인 기구로 고구려연구재단을 거기에 통합하되, 고구려사와 관련된 연구를 따로 할 수 있는 독자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흥 위원 동북아 역사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점하고요, 또 하나는 고구려연구재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구려연구재단이 흡수되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큰 우산 속에서 독립된 연구소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고구려연구재단 측도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유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아까 우리 교육위원회 관련 법률안에 대해 제가 교육부총리에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존경하는 백원우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가 의견 수렴한 내용에 대한 의견 질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안 되었을 때…… 구체적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책임지라는 말, 이것은 부적절한 과잉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총리에게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됩니까? 정치가 됩니까?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 민생, 어려운 점, 애로 사항을 섭렵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신문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모든 것을 발로 뛰어서 의견 수렴, 정책 수렴을 해서 좋은 법이 되고 좋은 정책이 되도록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국회의원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교육부총리에 대한 것도, 제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본인의 법도 냈습니다. 일선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견 제시 중에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백원우 위원께서 저에게 아까 ‘안 됐을 때 책임지시오’, 말하자면 도지사 안 됐을 때 저보고 책임지라는 말인데 그것은 부적절한 과잉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원에도 단독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김영숙 위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심의라든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니까 유치원 교육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정책,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학급짜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치가 곤란한 점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국감에서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공립 병설유치원에서 유치원 당사자들 이야기를 들으면 한 학급 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유아교육 계획 수립해야지요, 교육과정 편성해야 되지요, 혼자 그 학급을 담당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반을 증설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학급이 증설되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데도 좀 수월치 않겠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물론 수요가 있는 곳에는 증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증설이 되지 않아서 독자적인 경영이 어려운 병설유치원들은 독립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 초등학교 전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유치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것이…… 지금 저희한테 접수된 민원들을 보면 병설유치원들은 대체로 그런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찬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총리께서 작년 3월에 교직원체와의 간담회에서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 전공자로 보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행되지 않아서 교육 현장에서는 부총리에 대해서, 말이 앞서고 실천은 희박하다 이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6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사 중에 53%가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의 정책 판단이나 결재하는 장학관을 보면 고작해야 서울·부산·경상남도 교육청이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교육부 학교정책실 안에 유아교육지원과가 있는데 유아교육지원과에 전공자를 보임하지 않으니까 시·도교육청에서도 ‘아, 본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괜찮겠지’ 하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교육부에서 하는 정책이라든가 방향이 바로 시·도에서 보는…… 물론 직결되어야 합니다. 연관되어야 하고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여과가 많은데, 그래서 현장 경험과 유아교육 전문 이러한 것을 습득한 분이 여기에 보임되어서 유아교육 발전 계획 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약속도 하셨고 또 제가 국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작년에 유아교육단체들과의 대담 과정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가능한 한 반영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1년 운영해 보니까, 물론 유아교육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서 그런 행정 능력이 다 갖춘 분들이 있으면 보임해서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부에 초·중등 교육 담당하는 과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체험한 것은, 특히 유아교육의 경우에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유아교육과정을 편성한다든가 심의하는 일보다는, 지금 보육 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재원 배분을 어떻게 하면 더 확실하게 많이 할 수 있고, 지금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지적하듯이 유아교육에 대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와 국무총리실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와 청와대에 다니면서 이런 협조를 얻어내고 토의를 통해서 자기 주장을 펴서 설득력 있게 하는 능력 면에서는 현재 보임되어 있는 과장이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연구관 한 분 연구사 한 분을 그 과에 배치해서 지금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 판

단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큰 획을 긋는 것은 담당이 아닙니까?

지금 유아교육의 지원 재원에 대한 것, 청와대라든가 총리실이라든가에 가서 교육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한다는 것에서 중요하다 해서 지금 담당자가 잘한다……

물론 그 분도 사무관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을 겪었기 때문에, 총무과에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러한 행정행위는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각자 전공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 분은 그러한 면에서 역할을 발휘하면 되고, 교육 분야, 유아교육 분야, 유아교육 정책, 발전 계획 이러한 것에서는 그것을 전공한 분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아니면 어느 것이 전문성이 왜 발휘된다고 봅니까? 그러면 교육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왜 그 방면의 전문가를 채택하고 선발하고 발탁을 하겠습니까? 부총리께서는 지금 그것을 혼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유아교육이 전부 돈만 타 가지고 와서 하면 다 보육이라든가 그게 해결되는데, 교육하는 교육부입니다. 교육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교육이어야 된다고 제 대통령질문 때 총리께서도 긍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총리께서는 교육이 우리나라의 정책에서 가장 국정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이게 생각이 안 됩니까?

전문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일반 사무관을 해서 청와대에 가서 재원도 많이 마련해 오고…… 시켜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전부 다 전문성 발휘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그 분이 잘하니까 연구사 이런 분…… 그 아래 계통이지요. 두면 된다, 이것은 자유스럽지 못한, 모양새가 바르지 못한 뺨통식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어떤 직책을 어떤 자격을 갖고 경력을 가진 사람만이 하도록 정부직을 제한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역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부 관리들한테 전부 여론조사를 해서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대신 저는……

○김영숙 위원 제가 들은 바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얘기 충분히 하셨으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저는 오히려 교육부의 다른 자리들 있지요? 연구직이 하지 않는 다른 자리들, 예를 들면 대학 정책이라든지 인적자원개발정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도 교육 전문직에게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정책실에 있는 과들은 여러 가지 교육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전문직들로 보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 행정을 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과 같이 지금 각 부처와의 경쟁관계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해 나가는 단계에서는, 전문직들은 평생 유아교육이라는 좁은 분야에서의 전문성은 높지만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들과 잘 협력해서 만들어내는 능력은 태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워주는 것으로 연구관이나 연구사를 그 과에 보임시켜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의 범위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제 권한과 책임하에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점에 관해서 꼭 필요하시면 법안을 내서 정부가 그 범대로 하도록 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김영숙 위원 부총리께서 발언이, 부총리의 권한과 책무와 이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이상이면 법을 내서 해라 이것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보기에 그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황우석 박사가 그만큼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즐기세포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성이 발휘되어 가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평가되어서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이 허망한 일로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전부 다 전문성이라든가, 대학에 과가 왜 있으며 학위가 왜 있습니까?

역시 교육 비전공 부총리가 오시니까 비전공 부총리다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를 결과와 그다

음에 내용과 지금 하신 말씀이 그 테두리 안에서 밖에 왔다갔다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는 우리 교육이 교육 공급자들에 의해서 너무 오랫동안 독점되고 지방자치와 수요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뭐가 수요자에 대해서 저기입니까? 정말 착각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리……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우리 교육이 발전해야 할 길은 학부모와 학생, 수요자들의 요구를 정책에 많이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맞습니다. 바른 말을 하셨습니다. 교육정책이 수립되려면 교육 현장의 교육자 또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학습이 보장되어야 되고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위임받을 수 있는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되고 또 학부모에게는 학생을 교육시키는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수렴하고 듣고 내용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서 하시는 말씀으로밖에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계속 듣고서 귀를 여십시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 학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어떤 장관보다도 귀담아들으려고 자주 만나고 거의 매일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숙 위원님도……

○김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장학관들이 정책이라든가 교육 면은 알지만 다른 면은 못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폄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아니요, 저희가 경험을 해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요.

○김영숙 위원 장학관 출신들은 교육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채용이라든가 다른 것은 모른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이라고 봅니까? 그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폄하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김영숙 위원 교육전문가들을 폄하할 수 있나

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김영숙 위원님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왜 저한테 강요하십니까? 김영숙 위원님이 저한테 강요하실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김영숙 위원 아니, 장학관들은 교육에 대한 것만 알지 채용·행정업무는 서툴고 못 하더라, 지금 그랬어요. 행정업무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정책실장이 있는데, 교육전문가 출신입니다. 행정을 못 합니까?

○위원장 황우여 부총리께서 김영숙 위원님의 교육 전문성에 대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김영숙 위원 행정을 못 합니까, 학교정책실장? 윤용섭 실장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황우여 김영숙 위원님,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 어른의 품위 있는 표현을 속기록에 올리고……

○김영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하게끔 서면으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교육전문가·교육장학관들은 교육행정을 못 한다, 교육 내용만 알지 행정에서는 못 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김영숙 위원님, 제가 전문직 분들이 행정이나 이것을 못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못 한다고 그랬어요. 왜 번복합니까? 속기록 보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제가 못 한다고 한 적은 없고 저는 현재의 유아교육이 제대로 체제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관·연구사의 전문가들과 일반 행정직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이 많은 현재의 과장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고, 또 저는 전문직들이 가능하면 인적자원정책국이라든가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많이 진출해서 되도록 경쟁력 있는 사람이……

개인별로 능력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이라고 반드시 잘하고 일반직은 못 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숙 위원 경쟁력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면으로 답변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과장급이면, 판단입니다. 판단하는 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분에 대해서 행정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관을 뒀다 이런 뜻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게 너무……

○김영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얘기이지요.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황우여 지금 질의 순서를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과 최재성 위원님이 바꾸셨구먼요.

그러면 지병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존경하는 최재성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서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100분의 70인데 이것을 못 박지 말고 최저선으로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놓자는 말이지요.

100분의 50, 100분의 70 이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하'라고 그러든가, 예컨대 판교 같은 경우 지금 사실은 특별하게 적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개발이익이라든가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탄력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보되 다만 최저선은 정한다, 이런 취지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계제에 학교용지를, 최저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과, 쉽게 말해서 땅값이 비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차별화해서, 예컨대 땅값이 싸면 지금 아이들 체육 문제도 있고 공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용지를 좀더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차등 적용하는, 부지 면적 자체를 말입니다.

이것을 같이 검토해서 해 보면 결과적으로 재정 부담이 덜 소요되는 방향으로 교지 면적에 대한 기준들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

게 봅니다.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에, 김영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 중에 지금 유치원 운영위원을 선거인단에 단순히 그냥 포함할 경우에는 과다대표성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이것을 그대로 선거인단에 포함시킬 경우 초·중·고등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시행령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적용되면 과다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설치의 권장을 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되 대표성의 문제가 과다하지 않도록 시행령에서 적절하게, 예컨대 원장을 포함하여 1인이란가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게 한다면가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답변은……

○최재성 위원 검토하시라는 의견이기 때문에요, 검토하신 다음에 나중에 답변을 하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소위에서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진수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황우여 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지병문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지병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선 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2006년 예산심사 결과와 관련해서 아쉽고 또 제 개인적으로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유아교육 예산하고 관련해서……

○위원장 황우여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위원님이 오실 때까지 회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 다시 질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희 위원 2006년 예산심사 결과하고 관련해서요, 사실 저는 지난해 내내 이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교육 출발점에서의 평등, 유아교육의 질 제고,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학급 담임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부총리께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하셔서 아마 약속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진수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얼마 책정됐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모두 43억 5000만 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하려고 했던 310억 원에 비추어 보면 10% 약간 웃도는 그런 정도인데, 혹시 올해……

제가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사실은 법안 개정안도 발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난해 부총리께서 약속하신 것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특별교부금을 투입해서 약속을 지키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특별교부금은 단년도 특정사업 목적이 라고 하는 지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급 담임수당이고 다년간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존경하는 진수희 위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시고 저희도 이 필요성을 아주 절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국회 예결위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특교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가 지금 희망 한국 21이라고 하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 작업을 하면서……

○진수희 위원 부총리님, 그것은 됐고요. 제가 그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것은, 이것을 교육부나 부총리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셨다면 저는 원래 본예산이 편성될 때 이것이 포함됐

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단년도, 다년간 계속해야 되는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발의한 법안이 처리가 돼서 내년부터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상향 조정되면서 거기에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을 가지고 유치원 교사의 담임수당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제 올해 한 해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에 한해서 특교를 투입하는 것은 저는 아까 문제 제기한 그 입장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일단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가고요, 올해에는 좀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금년에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교육재정의 어떤 근본적인 틀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기에 우선 급한 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만 좀 인상해서라도 증액된 그 부분이 유아교육 그리고 특수교육 부분에까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도 저는 교육위원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교육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신속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기홍 의원님이 내신 동북아 역사재단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유사한 위원회며, 재단이며, 연구원이며,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고구려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등 굉장히 많은데……

물론 부분적으로 다 차별화는 되겠습니다만 굳

이, 이 법안에 따르면 110명이 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존 연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것이 하나의 질의고요.

그다음에 만약 동북아역사재단이 110명 규모로 출범하게 될 경우 그러면, 아까 제가 나열했던 기존의 위원회, 재단,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서 고구려연구재단이 기능이나 역할에서 가장 중첩될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고구려연구재단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고구려연구재단의 현재 인력을 포함해서 110명이라는 것인지 별도 있는지를 한번, 제가 유기홍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먼저 답변을 드리면 고구려연구재단은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데, 현재 연구재단의 인력, 성과물, 연구시스템을 모두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그 연구재단 안에서 독립된 연구소의 영역을 인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사한 여러 가지 위원회 조직이 있지만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또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예를 들면 각국의 시민단체와 진보세력에 대한 새로운 역사 연구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들, 그리고 고구려연구재단을 순수한 역사 연구기관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전략적 집행기능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들을 종합 고려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수희 위원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은 인원이 몇 명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32명입니다.

○진수희 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110명, 이렇게까지 큰 규모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금 연구인력이 어떻게 되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교수요원 60명을 포함해서 134명입니

다.

지금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중국의 사회과학 연구원은 4200여 명이예요.

○진수희 위원 아니, 중국하고 규모를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출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제출하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률안하고 정면으로 상충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 법안은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신 겁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당정협의를 다 했는데 저희 교육부에서는, 존경하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실 때도 이 법 전체를 아예 폐지시키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부담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데 중요 목적을 두고 발의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용지법은 설사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내용의 취지가 맞다 하더라도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운영해야 하고, 그러기 전까지 저희가 이번에 정부안으로 내놓은, 용지 매수가격을 인하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겁니다.

○진수희 위원 한 가지 더,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용지 공급 비용이 현재까지 감정가, 그러니까 조성원가의 약 120%로 되어 있던 것을 좀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진수희 위원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업 시행 주체인 주택공사라든지 토공, 그리고 지방공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이윤 폭이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건교부하고는 협의를 마치셨는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건교부, 행자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께서 주재하는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다 조정이 된 안입니다.

○진수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하여간 방법을 찾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수희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하여간 그것을 포함해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문 위원**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문제, 또 이렇게 되는 경우 전체 위원이 약 4만 1375명에서 최대 7만 4000명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초·중등 위원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 특히 이분들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에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립과 사립,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저는 이견이 좀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지금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별도로 다른 관련 법안들과 같이 소위에서 깊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방교육재정 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위원장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재작년에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면서, 1000분의 194로 늘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소위원회가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해서, 지금 진수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까지 포함해 대안을 만들어서 법안심사소위가 논의할 때 도움이 되도록 촉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제가 촉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병문 위원** 그다음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에 당연히, 저는 고구려 문제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이, 지금 고구려연구재단만 있는 경우보다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부총리님 말씀 중에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되 고구려연구재단은 그 내부에서 별도 연구소로서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그러면, 동북아역사재단 내에서 한쪽을 떼어 가지고 거의 독립적인 별도 연구소 형태로 고구려 문제를 하면 독도 문제만 남아 가지고, 오히려 규모가 훨씬 적은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110명이 되느냐, 지금 고구려재단이 32명인데 독도 문제 연구하면서 일본에 대한 정책하는 것이 그러면 80명이 넘을 것이냐, 산술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북아역사재단 내에, 예를 들면 고구려 문제 대책을 세우는 팀이랄지, 또 독도 문제에 대한 팀이랄지, 발해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를 대비하는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지금 현재의 고구려재단에 대해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해서 별도 연구소로 하고 나머지 것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반적인 관리 대상으로 간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 내부에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것은 저희가 동북아역사재단에 관한 법을 제정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시행령 작업을 할 때 다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여러 해 동안 독자적인 운영을 해 오던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팀의 형태로든, 아니면 독립된 연구소의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독자적인 연구 영역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학계와의 협력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다……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연구인력의 경우에 팀으로, 고구려역사를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정요원들까지도 별도로 가면 문제다, 그래서 연구인력을 별도의 팀으로 만들려면 독도 문제에 대한 팀, 발해 문제에 대한 팀을 만들고, 행정인력은 풀로 해서 서포트를 해야지, 이것을 별도의 연구소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다음에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이나 고등학교의 경우 100

분의 70으로 하는데, 지금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경기도가 한 600억 가까운 돈을 진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도가 재정적 어려움을 들어 가지고 거의 실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지병문 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동안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방정부가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재원을 별도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현재 있는 지방교육세율을, 취득세에 대한 것을 올리든지 아니면 재산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좀 올려서 한 5000억 내외의 재원을 별도로 만들어 지방정부가 그것에 따라서 교부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병문 위원 하여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정마련을 안 하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까마는, 소위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환급 문제, 이것은 부총리님이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익을 제기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사람, 또 납부하지 않고 버틴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결국, 위헌 판결이 난 이상 납부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그것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법을 지킨 사람은,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하는데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때로는 거부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돌려받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것 돌려주는 데 몇천억 문제를 따지고, 앞에서 부총리님께서도 현재 결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거 IMF 구제금융 받았을 때, 금융위기가

왔을 때 보면 백수십 조를, 금융기관들의 정책적 실패나 모럴 해저드에 의해서 발생한 부분을 공적자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경우에 한 20여만 명이 해당되는데, 이것을 20여만 가구로 생각하면 평균 5인 가족으로 했을 때 인구로 따져서 한 100만 명, 이것을 과연 법적, 현실적 한계만을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종전에도 당정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학교용지 확보는 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부담금을 환급하는 문제는 발상을 바꾸어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하는 경우에 계속 과급효과를 내서 다른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걱정하면 지난번에 백수십 조 공적자금 투입 못 했지요.

이것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접근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치적으로 참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면서도 소급입법에 의한 소급효를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환급해 주는 형태의 특별법을 한 번도 제정한 적이 없고, 아주 제한적으로 된 경우도 전부 국가의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형벌에 준하는 정도로 국민에게 어떤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소급해서 돌려주는 입법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을 이것이 만일 특별법의 형태로 해서 입법이 된다면 택지소유상환법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피해자들도 틀림없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것인데, 그리고 앞으로 내려질 위헌 판결들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현 위원 여기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만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물론 인사권은 전적으로 주무장관한테 있습니

다.

그런데 현장에서 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조금 귀담아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현장의 유아교육 전공자들, 유아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에 저도 질의를 했지만 보건교육 문제도 전공자들을 장학사든 연구사든 적어도 본부 차원에서 반드시 임용하셔야 한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데……

오래된 질의사항이고 여러 번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보건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의 사기를 굉장히 꺾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보건교육 쪽하고 유아교육 쪽하고 전공자들을 배려하는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 온라인 원서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경쟁률을 떨어뜨려 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네가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래 접수대행 사이트 회사는 그것이 부가통신 사업이기 때문에 정통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채 이것을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군현 위원 그 진상은 파악을 정확히 하셨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그 입시 문제는 온 국민들이…… 사실 한국은 교육열이 높아서 지대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더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우선 강화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대학에 자체 서버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또 대학 업체의 차단 프로그램도 설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 언론에 그것이 뻥작 아주 문제가 되었다가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지시하고

계신지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전문직이 가능하면 해당 정책 수립하는 영역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봐서 그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각 대학이 자체 서버를 갖게 하는 문제라든가 이번에 났던 온라인 원서 접수 사건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대학교육협의회 측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실효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관계 부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군현 위원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유기홍 의원님이 내신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련해서 저도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옛날의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하는 일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일이 생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하는 연구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광범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 고려, 중국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역사 연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본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모두 포함해서 각각 전문적인 학자들로 연구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중복되거나 겹치는 부분들은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잘 협의해 가면서 조율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군현 위원 그래서 연구의 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있어서 동북아연구재단에서 하는 연구 범위에 한계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혼선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20명이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한 20명 정도로 지금……

○**이군현 위원** 역사 연구와 관련해서는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키인데요. 공무원들을 정부에서 파견했을 때 연구의 객관성, 중립성에 훼손이 갈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설립 초기에 재단이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건물도 구해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지원수요를 충족하는데 그런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과거에 고구려역사재단을 운영해 보니까 순수한 학자들만의 힘으로는 연구 자료와 문헌을 실제로 확보하는 데 큰 애로를 느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공문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요청해서 얻는 것 외에는 얻지 못하다 보니까 그 연구가 상당히 제약을 받아서 그러한 연구 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행정요원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에서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동북아역사재단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는……

정부 보조금하고 출연금에만 의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 재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민간의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민간 기부……

지금 자체 조달 방안이 구체화된 것이 있느냐고요? 정부 보조금하고 출연금에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현재는 특별하게 자체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그러면 연간 예산을 지금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34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123억입니다.

○**이군현 위원** 123억이고, 새로 설립하는 여기는 330억을 예상한다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렇습니다.

○**이군현 위원** 연구원 수가 어디가 많은데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시설이나 설비가 이미 다 확보되어 있으니까 추가재원이 필요 없고……

○**이군현 위원** 지금 건물 짓는 것까지 예산에 포함된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설립하려면 초기에 돈이 많이 듭니다.

○**이군현 위원** 아니, 건물 말고요. 그러면 운영비만 얼마입니까?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얼마고 동북아역사재단은 얼마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123억의 거의 전부가 운영비고 시설비는 없고요.

○**이군현 위원** 아니, 건물 짓는 것을 빼고, 동북아역사재단의 1년 운영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현 위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금은 없습니다. 60억 예산만 지금 잡혀 있고……

○**이군현 위원** 아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탄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 된 것이 아니니까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작년에 정부 내에서 기획예산처와 협의했던 안은 360억이었고요.

○**이군현 위원** 운영비만 얼마냐고요? 1년에 운영비를 얼마로 추산하고 있느냐고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그 명세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60억이 정부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명세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군현 위원** 국인지 실인지, 담당 국에서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위원회나 기관이 굉장히 많이 설립되고 있는데, 있는 기관들 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자꾸 새것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국에서 정확한 소요계획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이군현 위원 시간이 갔는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아까 여러 분들이 질의 했는데, 이것에 대해 두 가지를 질의하겠는데요.

하여튼 성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환급특별법을…… 환급해 주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입법정책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군현 위원 하여튼 입장을 정확하게 내 보십시오.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어 있는데,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시·도 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경기도의 593억 원 외에는 시·도에서 부담한 실적이 없는데 교육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월 6일이었나요, 지난번에 교육부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협의가 됐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강북에 3개의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강의 남쪽에 있지만 강북보다 지자체의 재정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동작구도 예를 들고 관악구도 예를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교육감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요.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학교용지 매입재원을 특별히 뚫을 지어서 마련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학교용지 매입 조달재원의 교부가 어렵다고 봐서, 그 부분을 지금 지방세분 교육세율을 취득세든 재산세 중에 붙는 교육세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좀 인상하여 거기에서 한 50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군현 위원 서울시장이 서울시교육감하고 협

의해서 강북에 3개의 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강북만 열악한 것이 아니고 강의 남쪽에도 열악한 구가 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자립형 사립고 문제에 관해서는……

○이군현 위원 꼭 자립형 사립고는 아닙니다. 자립형 사학이든 특목고든 학교 자체를…… 강북만 열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남 쪽에 있더라도 관악이나……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강남 중에 특히 동작구가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에 관해서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을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저희 교육부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대 학생들과 관악구·동작구 간에 서울대 학생들 한 300여 명과 동작구·관악구의 학생 1000명을 대 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연결해 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장관님, 그것은 조금 혼선되어 버리니까……

멘토링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좋은 우수한 대학 아이들이 돈 없는 아이들한테 멘토링, 사사로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때 학교 자체를 유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북만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강남에서도 열악한 곳을 살펴서 그것을 서울시교육감하고 의논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하신 것이 있는가, 그 의논을……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그러한 일반적인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을 전달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했습니다.

○이군현 위원 열악한 곳에 학교를 세운다는 목적이라면 검토를 해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주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5분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낸 법안이 2건이 있어서 그것을 짚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 황우여** 발언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한 분이 오실 때까지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황우여** 현재로서는 의사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법안 심사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셔서 의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 교섭단체 간사님들은 위원님들께 회의 참석을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숙 백원우 유기홍 이군현
이인영 이주호 임태희 지병문
진수희 최재성 황우여

○**청가 위원(5인)**

구논회 권철현 임해규 최순영
한화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정부측 참석자**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정책홍보관리실장 정영선
학교정책국장 류영국
지방교육지원국장 박경재
재정기획관 황인철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해찬	백원우	열린우리당	2006. 2.13

○**의안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2006. 2. 10 안명옥·주호영·이윤성·유기준·정진섭·심재철·안상수·이해봉·이인기·신국환 의원 발의)

2월 13일 회부됨